

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공 보

**제602호 2017. 7. 19.(수)**

선 결	기관의 장

## 고 시

거창군 고시 제2017-92호 거창군 도로명부여 고시 ..... 3  
 거창군 고시 제2017-93호 도로명 주소 고시 ..... 6

## 공 고

거창군 공고 제2017-820호 보상계획열람공고 【노현리(소로2-204호선)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】 ..... 8  
 거창군 공고 제2017-828호 거창 승강기전문 농공단지 준공인가 공고 ..... 14  
 거창군 공고 제2017-832호 공인 등록 공고 ..... 19  
 거창군 공고 제2017-833호 주소 또는 거소불명자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... 20  
 거창군 공고 제2017-835호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..... 22  
 거창군 공고 제2017-838호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..... 28

회 계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거창군 / 편집 : 기획감사실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## 거창군 도로명부여 고시

『도로명주소법』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내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7. 19.

거창군수

1. 고시일 : 2017. 7. 19.

2. 고시방법 : 홈페이지, 공보, 읍·면사무소 게시판 등

3. 고시내용 : “[붙임] 참조”

※ 관계도서 열람 : 홈페이지, 민원봉사실 토지정보담당, 남상면사무소

4.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

<b>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</b>	신청을 받은 날부터 ⇒ 10일 이내	<b>주민 의견 수렴 공고</b>  14일 이상	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⇒ 30일 이내	<b>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</b> 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	심의 마친 날부터 ⇒ 10일 이내
<b>공고 및 신청인 통보</b>  · 심의 결과 · 내용 및 절차	공고한 날부터 ⇒ 30일 이내	<b>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</b> 주소사용자의 1/2 이상	동의 얻은 날로부터 (동의 생략 포함) ⇒ 10일 이내	<b>고시 및 신청인 통보</b>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	
		<b>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</b> 주소사용자의 1/2 이하	동의 만료일로부터 ⇒ 10일 이내	<b>공고 및 신청인 통보</b> 결과 통보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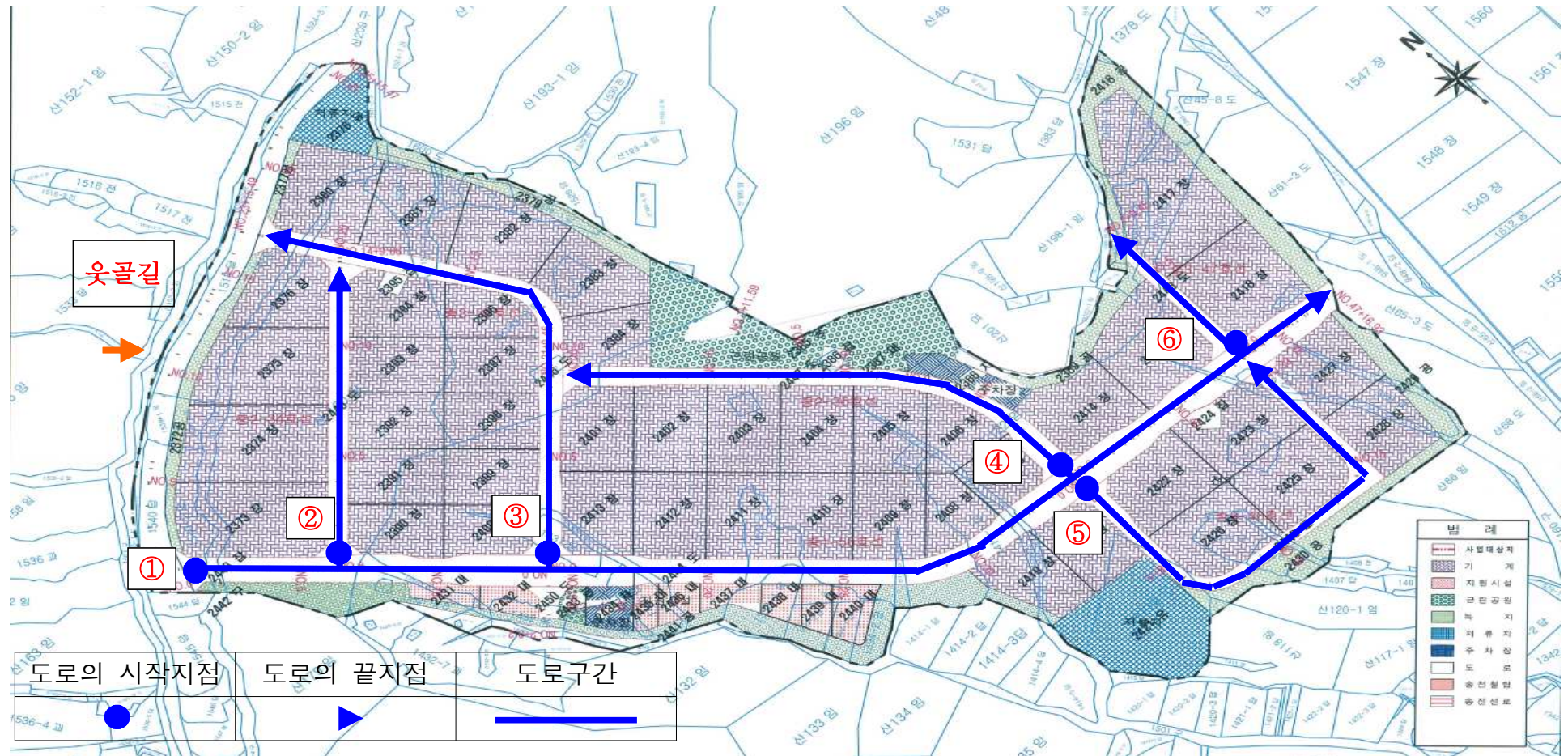
※ 도로명변경은 도로명 고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가능함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(☎055-940-3311~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내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조서

행정구역	도로명	부여사유	도로길이 (m)	도로폭 (m)	도로구간설정		기초번호		중심선
					송정1길	끝지점	간격 (m)	번호	
남상면	승강기 단지길	승강기 농공단지 특성 반영	956	22	대산리 949-22 대산리 2372(예비지번)	대산리 산65-3 대산리 2416(예비지번)	10	1~190	“도면참조”
남상면	승강기 단지1길	승강기 농공단지 특성 반영	289	15	대산리 산122-3 대산리 2390(예비지번)	대산리 산122-3 대산리 2394(예비지번)	10	1~54	“도면참조”
남상면	승강기 단지2길	승강기 농공단지 특성 반영	475	15	대산리 1481 대산리 2413(예비지번)	대산리 949-8 대산리 2377(예비지번)	10	1~90	“도면참조”
남상면	승강기 단지3길	승강기 농공단지 특성 반영	420	15	대산리 산122-10 대산리 2414(예비지번)	대산리 산122-8 대산리 2384(예비지번)	10	1~80	“도면참조”
남상면	승강기 단지4길	승강기 농공단지 특성 반영	426	12	대산리 산122-10 대산리 2422(예비지번)	대산리 949 대산리 2427(예비지번)	10	1~82	“도면참조”
남상면	승강기 단지5길	승강기 농공단지 특성 반영	149	12	대산리 산122-10 대산리 2418(예비지번)	대산리 1380-10 대산리 2416(예비지번)	10	1~28	“도면참조”
○ 유사도로명 및 동일도로명 : 없음									

□ 도로구간설정도면



도로구간	예 비 도로명	도로구간	예 비 도로명	도로구간	예 비 도로명	도로구간	예 비 도로명	도로구간	예 비 도로명	도로구간	예 비 도로명
①	승강기 단지길	②	승강기 단지1길	③	승강기 단지2길	④	승강기 단지3길	⑤	승강기 단지4길	⑥	승강기 단지5길

##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07. 19.

거창군수

-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보해길 523 외 5건(부여 6건)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(폐지)사유	비고
( 별 도 열 람 )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(☎055-940-3311~3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-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,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-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0 도로명주소부여

일련 번호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고 시 일	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			도로명	도로명주소		
1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265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773	2009-07-02	2017-07-19	행정구역명(수동면+남상 면) 활용	
2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888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황마로 1297	2009-07-02	2017-07-19	옛 노선명(황곡+마리면간) 활용	
3	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341-2	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길 131	2009-04-01	2017-07-19	금원산으로 가는 도로라하여 붙여진 이름	
4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-20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녹동3길 177	2009-04-01	2017-07-19	마을형태가 달아나는 누루가 어미를 돌아보는 것 같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	
5	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1145-4	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보해길 523	2009-04-01	2017-07-19	보해산이라는 산이름이 반영된 도로	
6	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857	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용동길 17-5	2009-04-01	2017-07-19	마을 뒷산이 방아공이 설이라 하고 마을 근처에 방앗간이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	

# 보 상 계 획 열 램 공 고

거창군에서 시행하는 『노현리(소로2-204호선)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 (보상계획의 열람 등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. 7. 13.

## 거 창 군 수

### 1. 사업개요

- 가. 사 업 명 : 노현리(소로2-204호선)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
- 나. 위 치 :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일원
- 다. 사 업 량 : 도로확포장 L=130.0, B=8.0m
- 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: 거창군수(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)

### 2.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

- 가. 토 지 : 거창군 거창읍 노현리 146-2번지 외 13필지
- 나. 물 건 :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
- 다. 열람내용 :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상물건 등 확인 및 누락 여부
- 라. 보상조서 : 붙임문서 참조

### 3. 열람 및 이의신청

- 가. 열람(이의신청)기간 : 공고일로 부터 14일간
- 나.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: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96)
- 다. 이의제기 :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

#### 4.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: 감정평가 실시결과 개별통지 예정

#### 5. 보상방법 및 절차

- 가.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거창군과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
- 나. 보상장소, 보상금액,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로 통지

#### 6. 감정평가업자 선정

- 가.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및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음
- 나.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

#### 7. 기타사항

- 가.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, 재조정,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,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등 관련법령에 의함
- 다.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

## ○ 보상조서(토지)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(㎡)	평면적 (㎡)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			성명	성명	주소	권리관계	
합계					1,096						
1	웅양면 노현리	229-6	도	46	10		거창군				
2	웅양면 노현리	229-9	대	106	4		거창군				
3	웅양면 노현리	1407-1	도	27	6		국 (건설부)				
4	웅양면 노현리	1411-5	구	21	5		국 (농수산부)				
5	웅양면 노현리	228-3	대	125	3		거창군				
6	웅양면 노현리	229-10	대	135	135	경남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***	한*록				
7	웅양면 노현리	1407	도	1332	160		국 (건설부)				
8	웅양면 노현리	146-2	대	521	10	울산광역시 남구 정광로24번길 **	김*선	중앙 ** 조합	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*	지상권자	
9	웅양면 노현리	228-6	대	22	22	경남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**	곽*림	수 승 대 ** 조합	경남 거창군 위천 면 장 기 리 **	근저당권 자	
10	웅양면 노현리	1411-8	구	863	85		국 (농수산부)				
11	웅양면 노현리	146-1	잡	1,902	221		거창군				
12	웅양면 노현리	145-2	잡	807	331		거창군				
13	웅양면 노현리	144-2	답	730	46	경남 거창군 웅양면 금광길 **	김*숙				
14	웅양면 노현리	144-1	답	670	58		거창군				

○ 보상조서(지장물)

순번	소재지	지 번	지장물		수량	단위	소 유 자		비고
			품명	구조및규격			주 소	성 명	
1	웅양면 노현리	228-1	가추	슬레이트	9.7	m <sup>2</sup>	경남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**	노*용	
2	웅양면 노현리	“	창고	슬레이트 2.3 x 9.3	21.4	m <sup>2</sup>	“	“	
3	웅양면 노현리	“	처마	슬레이트 (0.9 + 1.2)/2 x 6.7	7.0	m <sup>2</sup>	“	“	
4	웅양면 노현리	“	가옥	슬레이트 4.4 x 9.3	40.9	m <sup>2</sup>	“	“	
5	웅양면 노현리	“	담장	블록 (30.6 x 1.5) x 0.2	9.2	m <sup>2</sup>	“	“	
6	웅양면 노현리	“	담장	블록 (2.6 x 2.0) x 0.2	1.0	m <sup>2</sup>	“	“	
7	웅양면 노현리	229-10	창고	조립식 4.0 x 7.0	28.0	m <sup>2</sup>	경남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**	한*록	
8	웅양면 노현리	“	창고	조립식 3.0 x 6.6	19.8	m <sup>2</sup>	“	“	
9	웅양면 노현리	“	담장	블록 (40.0 x 1.6) x 0.2	12.8	m <sup>2</sup>	“	“	
10	웅양면 노현리	228	계단	콘크리트 ((0.2x0.9)+(0.2x0.6)+ (0.2x0.3)+(0.45x0.8)) x 16.8	12.1	m <sup>2</sup>	경남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**	곽*람	
11	웅양면 노현리	“	주목나무	-	3	주	“	“	
12	웅양면 노현리	“	연산홍	-	4	주	“	“	
13	웅양면 노현리	“	소나무	-	11	주	“	“	
14	웅양면 노현리	“	조경수	-	3	주	“	“	
15	웅양면 노현리	145-2	식당	슬레이트	126.0	m <sup>2</sup>	경남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**	이*자	
16	웅양면 노현리	“	바닥	콘크리트	22.3	m <sup>2</sup>	“	“	
17	웅양면 노현리	“	소나무	-	12	주	“	“	
18	웅양면 노현리	“	꽃사과	-	1	주	“	“	

순번	소재지	지 번	지장물		수량	단위	소 유 자		비고
			품명	구조및규격			주 소	성 명	
19	웅양면 현리	“	앵두나무	-	1	주	“	“	
20	웅양면 현리	“	매화	-	1	주	“	“	
21	웅양면 현리	“	연산홍	-	30	주	“	“	
22	웅양면 현리	145-2	가옥	기와 6.3 x 13.1	82.5	m <sup>2</sup>	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**	이*현	
23	웅양면 현리	“	가옥	슬레이트 ((5.0+5.8)/2) x 3.4	18.4	m <sup>2</sup>	“	“	
24	웅양면 현리	“	가옥	기와 3.4 x 7.1	24.1	m <sup>2</sup>	“	“	
25	웅양면 현리	“	담장	블록 (5.8 x 1.5) x 0.2	1.7	m <sup>2</sup>	“	“	
26	웅양면 현리	145-2	화장실	슬레이트 2.1 x 2.6	5.5	m <sup>2</sup>	경남 거창군 거창읍 웅양로 **	이*준	
27	웅양면 현리		가추	슬레이트 2.1 x 12.6	26.5	m <sup>2</sup>	“	“	
28	웅양면 현리		가옥	슬레이트	145.3	m <sup>2</sup>	“	“	
29	웅양면 현리		가옥	슬레이트	17.6	m <sup>2</sup>	“	“	
30	웅양면 현리	146-1	하우스	비닐 4.0 x 6.0	24.0	m <sup>2</sup>	경남 거창군 거창읍 웅양로 **	김*순	
31	웅양면 현리	145-2	창고	양철 4.5 x 10	45.0	m <sup>2</sup>	경남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**	최*이	
32	웅양면 현리	“	창고	슬레이트 (4.1x7.0) + (3.3x3.1)	38.9	m <sup>2</sup>	“	“	
33	웅양면 현리	145-2	화장실	간이화장실 1.1 x 1.5	1.7	m <sup>2</sup>	경남 거창군 거창읍 웅양로 **	김*순	
34	웅양면 현리	144-1	소나무	-	12	주	소유자 불명		

<붙임 : 의견서 >

『노현리(소로2-204호선)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』  
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

1.제 목		
2.소유자 및 이해관계인	성 명(명칭)	
	주 소	
3.의 견		
4.기 타		
<p>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17. . . . .</p> <p>의견 제출인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전화번호 :</p> <p><b>거 창 군 수 귀하</b></p>		
비 고	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	

## 거창 승강기전문 농공단지 준공인가 공고

거창군 고시 제2017-61호(2017.5.17.)로 거창 승강기전문 농공단지계획(변경) 승인·고시한 승강기전문 농공단지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.

2017년 7월 19일

거창군수

1. 사업의 명칭 : 거창 승강기전문 농공단지
2. 사업시행자의 성명·주소
  - 가. 성명 : (주)산양종합개발 대표이사 이인식
  - 나.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
3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
  - 가. 위치 :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일원
  - 나. 면적 : 308,151.1m<sup>2</sup>
4. 준공인가 연월일 : 2017. 7. 19.

## 5.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

### 가. 공공시설의 관리처분

구 분	전 체		처 분 사 항	비 고
	연장(m)	면적(m <sup>2</sup> )		
도 로	2,630	50,984.0	거창군으로 무상귀속	
송전철탑		1,107.6	한국전력공사로 무상귀속	
공 원		12,792.0	거창군으로 무상귀속	
녹 지		28,874.3	거창군으로 무상귀속	
저류시설		11,089.7	거창군으로 무상귀속	
구 거		22.8	농림축산식품부로 무상귀속	
우수관로	3,852		거창군으로 무상귀속	
오수관로	2,439		거창군으로 무상귀속	
상수관로	공업용수	2,571	거창군으로 무상귀속	
	생활용수	3,752	거창군으로 무상귀속	

### 나. 토지의 관리처분

구 분	면 적(m <sup>2</sup> )	소유자	관리처분계획	비 고
합 계	308,151.1	-	-	
산업시설용지	192,103.5	(주)산양종합개발	산업입지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처분	
지원시설용지	8,051.6	(주)산양종합개발	산업입지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처분	
주차시설용지	3,125.6	(주)산양종합개발	산업입지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처분	
공공시설용지	104,870.4	-	-	
도 로	50,984.0	거창군	산업입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무상귀속	
송전철탑	1,107.6	(주)산양종합개발	산업입지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처분	
공 원	12,792.0	거창군	산업입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무상귀속	
녹 지	28,874.3	거창군	산업입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무상귀속	
구 거	22.8	농림축산식품부	산업입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무상귀속	
저류시설	11,089.7	거창군	산업입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무상귀속	

## 6.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

### 가. 무상귀속분 총괄(조성후)

구 분	면 적(m <sup>2</sup> )	사업시행자	귀속 및 관리기관	비 고
합 계	103,762.8	-	-	-
도 로	50,984.0	(주)산양종합개발	거 창 군	도 로: 7개노선
공 원	12,792.0	(주)산양종합개발	거 창 군	공원: 2개소
녹 지	28,874.3	(주)산양종합개발	거 창 군	완충녹지: 8개소
구 거	22.8	(주)산양종합개발	농림축산 식품부	구 거 : 1개소
유 지	11,089.7	(주)산양종합개발	거 창 군	저류시설: 2개소

### 나. 국가기관 무상귀속조서(조성후)

#### 1) 구거

구 분	소재지	지 번	지 목	면 적(m <sup>2</sup> )		소유자	비 고
				공부면적	편입면적		
1	남상면 대산리	2441	구	22.8	22.8	농림축산 식품부	
합 계				22.8	22.8		

### 다.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조서(조성후)

#### 1) 도로

구 분	소재지	지 번	지 목	면 적(m <sup>2</sup> )		소유자	비 고
				공부면적	편입면적		
1	남상면 대산리	2442	도	23,712.9	23,712.9	거창군	도로
2	남상면 대산리	2443	도	4,247.3	4,247.3	거창군	도로
3	남상면 대산리	2444	도	8,218.9	8,218.9	거창군	도로
4	남상면 대산리	2445	도	6,821.8	6,821.8	거창군	도로
5	남상면 대산리	2446	도	1,879.2	1,879.2	거창군	도로



구 분	소재지	지 번	지 목	면 적(m <sup>2</sup> )		소유자	비 고
				공부면적	편입면적		
6	남상면 대산리	2447	도	5,554.5	5,554.5	거창군	도로
7	남상면 대산리	2448	도	549.4	549.4	거창군	도로
합 계				50,984.0	50,984.0	-	-

## 2) 공원

구 분	소재지	지 번	지 목	면 적(m <sup>2</sup> )		소유자	비 고
				공부면적	편입면적		
1	남상면 대산리	2385	공	12,220.3	12,220.3	거창군	근린공원
2	남상면 대산리	2432	공	571.7	571.7	거창군	소공원
합 계				12,792	12,792	-	-

## 3) 완충녹지

구 분	소재지	지 번	지 목	면 적(m <sup>2</sup> )		소유자	비 고
				공부면적	편입면적		
1	남상면 대산리	2372	공	2,431.2	2,431.2	거창군	완충녹지
2	남상면 대산리	2377	공	523.7	523.7	거창군	완충녹지
3	남상면 대산리	2379	공	1,995.7	1,995.7	거창군	완충녹지
4	남상면 대산리	2388	공	2,812.2	2,812.2	거창군	완충녹지
5	남상면 대산리	2415	공	5,312.5	5,312.5	거창군	완충녹지
6	남상면 대산리	2428	공	2,309.1	2,309.1	거창군	완충녹지
7	남상면 대산리	2429	공	3,604.2	3,604.2	거창군	완충녹지
8	남상면 대산리	2440	공	9,885.7	9,885.7	거창군	완충녹지
합 계				28,874.3	28,874.3	-	-

4) 저류지

구 분	소재지	지 번	지 목	면 적(m <sup>2</sup> )		소유자	비 고
				공부면적	편입면적		
1	남상면 대산리	2378	유	2,818.1	2,818.1	거창군	
2	남상면 대산리	2420	유	8,271.6	8,271.6	거창군	
합 계				11,089.7	11,089.7	-	-

7. 관련도서는 거창군청(기업지원과:☎055-940-336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(관계도서 게재생략). 끝.


## 공인 등록 공고

「거창군 공인조례」 제6조에 따라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추진에 따른 공인을 등록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. 7. 17.

## 거 창 군 수

1. 공인 등록 사유: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업무 추진
2. 등록 공인  
가. 등록 공인: 1점  
나. 최초 사용일: 2017. 7. 18.
3.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

공 인 명	규 격	인 영
거창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재무관인	2.0cm×2.0cm	

# 공 시 송 달 공 고
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268번지 일원에 시행중인 「폐기물처리시설(매립시설) 3단계 조성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보상협의를 할 수 없어 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소 또는 거소불명자 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,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. 07. 18.

## 거 창 군 수

1. 사 업 명 : 폐기물처리시설(매립시설) 3단계 조성사업

2. 사업시행자 : 거창군수

3. 협의기간, 장소 및 방법

가. 협의기간 : 2017. 7. 18 ~ 2017. 7. 31

나. 협의장소 :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, 거창군청 환경과(055-940-3502)

다. 협의방법 :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,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

4. 보상의 시기·방법 및 절차

○ 계약체결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등기이전 접수 및 소정의 절차에 의거 개별적으로 계좌 입금

5.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

가. 작성서류(협의장소 비치)

- 보상금청구서, 손실보상협의계약서, 공공용지취득협의서, 위임장, 등기촉탁승낙서, 확인서면

나. 인감증명서 1부

다. 주민등록초본(주소지 변경사항 모두 기재) 1부

라. 협의대상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(임야)대장 1부

마. 은행통장사본 1부(보상금 수령용)

바. 인감도장(계약양식 날인) 및 신분증 지참

## 6. 토지 등의 표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보상액 (원)	공고 사유	비고
						성명	주소			
3	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	산143	임	298	298	장석운	경남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	1,817,800	미등기	임야대장상 소유자

## 「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「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」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거창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7월 18일

거 창 군 수

### 1. 조 례 명 : 「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」

### 2. 개정이유

-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법령과 다르게 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고,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그 규모를 완화하여 주민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그 규모를 완화함(안 제12조)
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 가능  
※ 근거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

#### 나.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삭제함(안 제17조)
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 위임없이 규제를 정하고 있어 삭제

### 4. 입법예고기간 : 2017. 7. 18. ~ 2017. 8. 6.(20일간)

### 5. 「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: 붙임

## 6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등

다. 의견 제출하는 곳 : (우)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환경과 **【☎055-940-3505, Fax055-940-3759 또는 메일 minoooha@korea.kr】**

라.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

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**【☎055-940-3505】**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##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017 ~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	2017. 7. .
제 출 자	환경과장

### 1. 제안 이유

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법령과 다르게 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고,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그 규모를 완화하여 주민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.

※ 조례 규제개선 50선, 위임조례(규제완화) 정비과제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그 규모를 완화함(안 제12조)
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 가능

※ 근거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

#### 나.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삭제함(안 제17조)
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 위임없이 규제를 정하고 있어 삭제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11조

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, 제7조, 제8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2017. 7. 18 ~ 2017. 8. 6

(나) 예고결과: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분석의뢰 후 반영

(6) 도내 개정완료: 김해시, 사천시, 창원시, 함안군



##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17조를 삭제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※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2018.1.1.이므로 그 시행일을 맞춤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개방화장실의 지정)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&lt;단서신설&gt;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</p> <p>제17조(준수사항)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·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2.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</p> <p>3.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.</p> <p>4. 그 밖의 화장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개방화장실의 지정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다만,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<p>&lt;삭 제&gt;</p>

##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 절차법」 제41조,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7월 19일

### 거 창 군 수

#### 1. 자치법규명 :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

#### 2. 개정이유

「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기능 축소로 행정환경변화에 맞추어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가. 여성의 비율이 30%이상 규정 삭제(구 제2조 제1항)

-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위배사항 임(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함)

나. 협의회 정관 작성 규정 삭제(구 제2조 제2항, 제3조)

- 협의회는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조직으로 정관 작성 후 군수의 인가로 성립된다는 규정은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아니함.

\*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1조제1항

다. 협의회 재정 관련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운영 조항 삭제(구 제9조)

- 협의회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조직이므로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.

라. 그 밖의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에 맞춰 개정함

#### 4. 입법예고기간 : 2017. 7. 19~ 2017. 8. 8. (20일간)

#### 5. 의견제출

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[참조 : 보건소장, 주소 :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, 우편번호 50142]에게 서면이나 메일 (hapkys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등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**☎(055)940-8312**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 1부. 끝.

#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017-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	2017. 7. .
제 출 자	보건소장

## 1. 제안이유

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기능 축소로 행정환경변화에 맞추어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.

※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

## 2. 주요내용

가. 여성의 비율이 30%이상 규정 삭제(구 제2조 제1항)

-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위배사항 임(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함)

나. 협의회 정관 작성 규정 삭제(구 제2조 제2항, 제3조)

- 협의회는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조직으로 정관 작성 후 군수의 인가로 성립된다는 규정은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아니함.

\*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1조제1항

다. 협의회 재정 관련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운영 조항 삭제(구 제9조)

- 협의회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조직이므로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.

라. 그 밖의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에 맞춰 개정함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1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20일 이상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도내 개정 현황: 5개군 개정(남해, 하동, 창녕, 함양, 합천)

##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

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등) ①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설치한 각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마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군수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
③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제3조(회장의 직무)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3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5조(회의)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

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간사)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<p><u>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</u></p> 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1조에 따라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제2조(설치)</u> ①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하되, 여성의 비율이 30%이상인 되도록 노력한다.</p> <p>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.</p> <p>③ 군단위에는 각 협의회 회장 및 보건의료 관련 지식이나 덕망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.</p>	<p><u>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농어촌-----」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-----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띄어쓰기함(위원회 명칭은 법적용어로 띄어쓰기 불가)</li> <li>○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위배사항으로 삭제, 조례에 규정할 필요 없음.</li> <li>○ 단순 자문기구인 협의회에, 정관 및 자격기준은 불필요 삭제</li> <li>○ 군 단위 연합회 없음 삭제</li> </ul>

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<p><u>제3조(정관) 협의회</u>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명칭</li> <li>2. 사업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위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임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</li> </ol>	<p>제2조(구성 등) ① 「<u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회의(이하 “<u>협회</u>”라 한다)는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설치한 각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마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군수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</p> <p>②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</u></p> <p>&lt;삭 제&gt;</p>	<p>○ 협의회는 농특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법적 의무 설치 조직으로, 법인에 적용되는 정관규정 등은 바람직하지 않음. 삭제</p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유
<p>제4조(기능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건의</p> <p>2.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에 관한 자문 및 건의</p> <p>3.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</p>	<p>&lt;삭 제&gt;</p>	<p>○ 협의회는 농특법 제21조 규정에 업무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</p> <p>○ 제3호는 법령 범위를 벗어난 사항임</p>
<p>제5조(임원) ① 협의회 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회장, 부회장, 감사, 총무 각 1명씩을 둔다.</p> <p>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④ 감사는 협의회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하며, 총무는 협의회 재정을 관리한다.</p> <p>⑤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.</p> <p>⑥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⑦ 임원 및 위원이 사임,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회장의 직무 등) &lt;삭 제&gt;</p> <p>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----- -----때 에 - - - - -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	<p>○ 재정없는 협의회에 감사, 총무는 불필요하며, 결산, 감사 업무 없어 삭제</p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<p>제6조(회의) ① 회장은 협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</p> <p>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7조(간사)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.</p> <p>제8조(수당 등)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</li> <li>2.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li> <li>3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</li> </ol> <p>제5조(회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협의회회의 회의는-----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-----</p> <p>제6조(간사) ---- 협의회 사무를 ----- -----두며, -----</p> <p>&lt;삭 제&gt;</p>	<p>○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 제3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의 규정을 불필요하여 삭제함</p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유
<p>제9조(재정) ① <u>협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,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.</u></p> <p>② <u>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 <p>제10조(시행규칙) 이 <u>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WE</p>	<p>&lt;삭 제&gt;</p> <p>제7조(운영세칙) -- <u>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</p>	<p>○ 농특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 의무 설치 조직으로 경비는 군수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. 삭제</p>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

[시행 2016.11.30.] [법률 제14183호, 2016.5.29., 타법개정]

**제15조(보건진료소의 설치·운영)** ① 시장[도농복합형태(都農複合形態)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, 읍·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]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시·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·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.

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,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10.22.]

**제21조(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)**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.

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
2.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

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10.22.]

**제23조(지도·감독)**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를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10.22.]

□ 양성평등기본법

[시행 2016.12.20.] [법률 제14444호, 2016.12.20., 일부개정]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**협의회**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